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723호

나. 발 의 자 : 김기덕 의원

다. 발의일자 : 2025년 5월 25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II. 제안이유

-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의 사례가 발생해, 실질적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침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권보호 및 편의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Ⅲ. 주요내용

- 특수교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조항 규정함(안 제4조 제1항)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및 신고시스템 관련 조항 신설함(안 제7조)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및 편의지원 조항 신설함(안 제9조의4)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5. 6. 3. ~ 6. 7.(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5일 김기덕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723호로 발의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권보호 및 편의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호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지난 2018년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사건이 사회적 이슈¹⁾로 부각된 이후,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²⁾
-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결과³⁾’를 유형별로 보면, '따돌림'(11.6%), '언어폭력'(8.6%), '신체폭력'(5.7%), '강요/괴롭힘'(3.3%), '사이버폭력'(2.2%), '금품갈취'(1.8%), '성폭력'(1.2%)의 순으로, 전년도(2023년) 대비 '따돌림'은 0.8%,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은 0.6% 증가하였습니다.

1) 교육부, 특수학교 폭행사건 강력대응...장애학생 인권침해 여전(YTN, 2018.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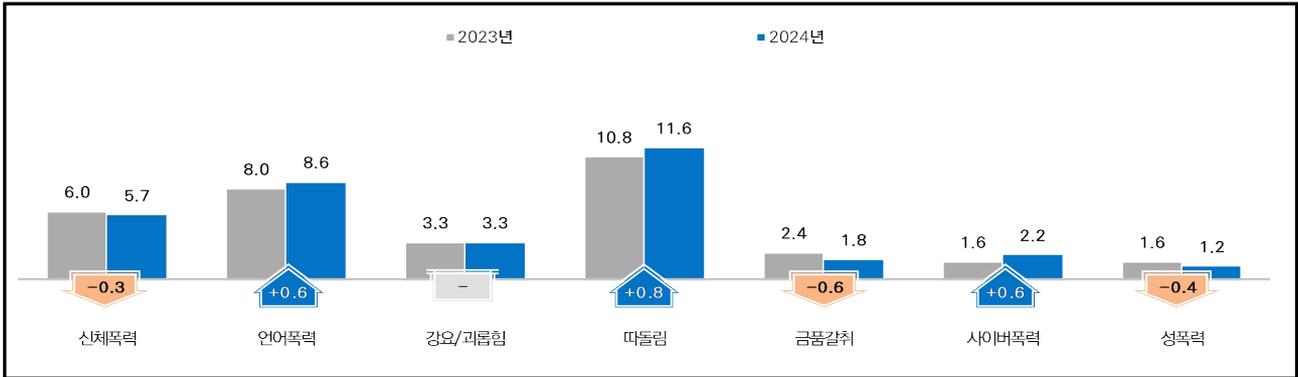
2) 작년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 재작년보다 61%↑...경기 최다(헤럴드경제, 2022.10.22.)
교사 폭언·성폭력 '인권침해' 피해 속출...'장애학생' 취약(노컷뉴스, 2022.3.30.)

3)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개요

- 온라인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총 4,424명 중 2,405명(54.4%)이 조사 완료
※ 2024 특수교육통계상 조사대상자(총 10,039명) 기준 응답률 24.0%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보호자는 총 4,424명 중 2,745명(62.0%)이 조사 완료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원의 경우 총 1,106명 중 1,061명(95.9%)이 조사 완료

[그림-1] 2023~2024년 학교폭력 피해 경험(학생)

※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⁴⁾ 결과 중 일부)



○ 이러한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하며, 열악한 지원으로 인해 인권은 물론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표-1]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서비스 관련 설문조사 결과

※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⁴⁾ 결과 중 일부)

조사 대상	조사 결과
학생	(시각) 점자, 음성파일 등 교수학습 자료를 '지원받지 않았다' 9.8% 교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유도블록, 점자안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12.2% (청각) 구어 및 수어를 '지원받지 않았다' 15.2% (지체)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신체 활동 지원을 '받지 않았다' 15.7% 교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7.1%
보호자	- 자녀의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경험: '있다' 3.1%, '없다' 91.9% · 자녀의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경험이 있는 경우 사유: '참여를 위한 별도의 지원 인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 (30.6%)' - 자녀의 학교에 이동 편의 시설 및 설비 설치 여부: '학교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 39.7%, '학교 일부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24.9%,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1.2%
교사	-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 편의 시설 및 설비 설치 여부: '학교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 48.4%, '학교 일부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48.2%,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5% - 유도블록 및 점자 안내판 설치 여부: '학교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 33.7%, '학교 일부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56.3%,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10.0% - 위급상황시 대피를 안내하는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여부: '학교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 44.0%, '학교 일부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32.1%,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3.9%

4)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조사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
- 조사대상: 학생, 보호자, 교원
- 조사기간: 2024.5.7. ~ 2024.6.14.

-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와⁵⁾ 관련 서비스⁶⁾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다양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약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특수교육법」과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적 방향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다 명확히 보장하고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는 입법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나.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

1) 인권보호 및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등(안 제7조)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제1항)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구성·운영(제2항)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현행 조례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인권침해 발생 이후의 신고시스템 구축과 사건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 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표-2]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피해 발생 건수

(서울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접수 내용 기준, 단위: 건)

구분	성폭력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	강요 괴롭힘	사이버 폭력	가정폭력		합계
	성폭행	성추행							학대	방임	
2022	5	8	22	8	5	0	1	1	4	2	56
2023	6	15	49	22	3	3	5	7	12	5	117
2024	4	17	20	6	0	0	8	10	5	3	83

-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안 발생 이후의 대응만큼이나 사전 예방과 보호를 위한 선제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지원단은 특수교육대상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지원, 더봄 학생⁷⁾ 대상 인권침해 예방 및 사안 발생 시 신속한 관리와 지원, 예방교육과 연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3] 최근 3년간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실적

(단위: 회)

연도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2022	61	20	94	78	49	302
2023	90	28	98	85	47	348
2024	74	20	90	80	44	308

-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여전히 신고 및 조사 중심의 사후적 대응에 머물러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안 7조는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보장 범위를 보다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7)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학생(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매뉴얼)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편의 지원 등(안 제9조의4)에 대한 검토

- 안 제9조의4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제2항)과 이를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3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제2호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현행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4]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추진 현황

서비스명	내용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월 16만원 한도에서 바우처카드(공센카드) 또는 현금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거리 2km 이상인 학생 또는 2km 이내이지만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지체, 시각,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통학비 지원
특수학급 신증설 지원	신증설 특수학급 시설·설비 확충 및 제반 소요 비용 지원 - 학급 당 (유치원) 금20,000,000원, (초·중·고) 금40,000,000원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수요 조사 후 심사를 통한 학습보조기(학습활동 보조) 및 보조공학기기(신체적 불편함 개선) 지원
장애학생 가족 지원사업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캠프, 비장애형제자매 지원, 멘토링 등)
지원인력 배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 따라서 안 제9조의 4(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편의 지원 등)는 상위법 및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864, 2025. 6. 4.).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명신(2180-8269)
----------	----------------	-------	----------------

관계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1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 11의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284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

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8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